

접수번호		M291-26- .	검사자	안전현 (서명)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3부. 미끄럼틀		결과치 "-": 해당없음
일반		미끄럼틀은 이 규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.		☐ 합 ☐ 불 ☐ -
접근		출발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다리, 계단, 상승구간, 상승 장치를 이용한다.		☐ 합 ☐ 불 ☐ -
		독립미끄럼틀의 경우, 첫번째 계단에서 방향 전환이나 갈림이 없이 접근수단(계단)의 최소 너비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직높이는 2 500 mm 이하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출발지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, 측면보호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, 최대자유하강높이는 2 000 mm 이하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자유하강높이가 1 000 mm를 초과하는 연결(부착)미끄럼틀의 경우, 접근 개방구(입구)를 가로 지르는 가로대를 설치할 것. 가로대의 높이는 출발지점 위 600 mm ~ 900 mm 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출발 지점이나 울타리가 플랫폼 가장자리 넘어 위치한 연결(부착) 미끄럼틀의 경우, 가로대와 플랫폼 사이의 출발지점은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		☐ 합 ☐ 불 ☐ -
출발 지점	일반	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미끄럼틀의 출발지점이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경우, 플랫폼과 미끄럼틀의 연결지점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을 것		☐ 합 ☐ 불 ☐ -
	길이와 각도	출발지점의 길이는 350 mm 이상, 내리막 경사 허용치는 미끄럼틀 길이방향으로 중앙선에서 측정했을때 0° ~ 5° 일 것.		() mm ()° ☐ 합 ☐ 불 ☐ -
	측면 보호대	출발지점이 아래 명시된 것 중 하나에 해당되면, 측면보호대는 제1부에 명시된 울타리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. - 출발지점길이가 400 mm 초과하는 경우 - 출발지점에 쉽게 접근가능하고, 자유하강높이가 1 000 mm를 초과하는 경우 - 출발지점의 자유하강 높이가 2 000 m 를 초과하는 경우 측면보호대는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, 연장되어 있을 것		☐ 합 ☐ 불 ☐ - ☐ 합 ☐ 불 ☐ -
		측면보호대가 유지측면의 가장자리 면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, 최대 수평, 수직 간격은 89 mm 미만일 것.		☐ 합 ☐ 불 ☐ -
		부착(연결) 미끄럼틀에서 울타리의 개구부는 입구는 출발 지점 또는 활강 지점의 폭과 동일해야 한다.		☐ 합 ☐ 불 ☐ -
		부착(연결) 미끄럼틀에서 출발지점의 전체 혹은 일부분이 플랫폼의 끝단에서 연장된 부분에 있다면, 측면보호대의 높이는 적어도 500 mm 이상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부착(연결)미끄럼틀에서 출발지점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은 제1부 4.2.4(하강에대한보호)의 기준에 부합할 것		☐ 합 ☐ 불 ☐ -
		독립미끄럼틀의 측면보호대는 한지점에서 플랫폼에 요구되는 최소의 높이를 충족할 것		☐ 합 ☐ 불 ☐ -
	폭	출발지점의 폭은 활강부분의 폭과 동일해야 한다. 단, 플랫폼이 출발지점으로 사용된다면 출발지점의 폭은 활강지점의 폭보다 커질 수 있다.		☐ 합 ☐ 불 ☐ -
	측면 보호대 (측면)	측면보호대의 상단 가장자리는 출발지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터, 활강지점에 대한 유지측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 연속, 연장될 것.		☐ 합 ☐ 불 ☐ -
		측면보호대의 어떤 연결부도 얽매임을 형성하지 않을 것. 활강방향으로 설치된 측면보호대의 상단 기울기의 모든 변화의 정도는 어떤지점에서도 반경 50 mm 이상일 것.		☐ 합 ☐ 불 ☐ -
활강 지점	길이와 각도	초기 직선 활강지점의 길이는 7 000 mm를 넘지 않을 것. 방향이 변한 이후, 2번째 직선 활강지점 및 이어지는 직선 활강지점의 길이는 5 000 mm를 넘지 않을 것.		초기() mm 2번째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활강지점의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모든지점에서 60° 를 초과하거나, 전체 기울기의 평균이 40° 를 넘어서도 안 된다.		()° ()° ()° ☐ 합 ☐ 불 ☐ -
		출발지점과 활강지점사이의 전환부위를 제외하고, 미끄럼틀의 기울기의 변화정도가 15°를 초과한다면 아래의 곡률반경을 만족할 것 - 초기 2 000 mm 높이에서의 변화에는 최소 450 mm 이상의 곡률반경 - 미끄럼틀 나머지 부분에는 최소 1 000 mm 이상의 곡률반경		☐ 합 ☐ 불 ☐ -
		개방직선형의 비터널형 미끄럼틀의 활강길이가 1 500 mm이 넘는 경우, 미끄럼틀의 폭은 700 mm 미만이거나 950 mm 초과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폭	다수트랙미끄럼틀의 각각의 폭은 700 mm 미만일 것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나선형, 곡선형 미끄럼틀의 활강지점 폭은 700 mm 미만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(/)	

접수번호		M291-26-	검사자	안전현 (서명)	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3부. 미끄럼틀		결과치 "-": 해당없음	
활강지점	미끄럼틀의 측면과 단면	활강지점 표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측정했을 때, 자유하강 높이에 따른 유지측면의 높이 기준을 만족할 것. • 자유하강높이(h) $\leq$ 1 200 mm $\rightarrow$ 유지측면 높이(p) $\geq$ 100 mm • 1 200 mm < h $\leq$ 2 500 mm $\rightarrow$ p $\geq$ 150 mm • h > 2 500 mm $\rightarrow$ p $\geq$ 500 mm • h > 2 000 mm (쉽게 접근할수 있는 경우) $\rightarrow$ p $\geq$ 500 mm 평평한 유지측면의 경우, 유지측면의 기울어진 정도가 수직선 기준으로 30°를 초과하지 않을 것. 곡선형태의 유지측면의 경우, 수직인 형판의 짧은 부분이 수평하도록 설계될 것. 유지측면은 활강 표면에 대해 수직이거나 곡선 또는 둔각일 것 유지측면의 가장자리는 곡률반경 3 mm 이상으로 곡선처리 되거나, 사용자를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. 다수트랙미끄럼틀의 경우 트랙을 분리하는 측면은 최소 100 mm 의 높이를 가질 것. 다수트랙미끄럼틀의 트랙을 분리하는 측면은 최소반경 3 mm의 곡선처리될 것. 각 측면은 활강지점 전체에 이어질 것.		h : () mm p : () mm 쉽게접근여부 () ☐합 ☐불 ☐ - ()° ☐합 ☐불 ☐ - ☐합 ☐불 ☐ - ☐합 ☐불 ☐ - () mm ☐합 ☐불 ☐ - ☐합 ☐불 ☐ -	
		도착지점	제1형	도착지점 길이 500 mm 이상의 최대 기울기는 10° 이하일 것	() mm ()° ☐ 합 ☐ 불 ☐ -
			제2형	도착지점의 길이 [활강지점길이(mm) $\times$ 0.3] 이상의 최대 기울기는 5° 이하일 것 단, 물이용놀이기구의 미끄럼틀의 경우 2형 미끄럼틀을 사용할 것. 활강지점길이 : mm	() mm ()° ☐ 합 ☐ 불 ☐ -
			길이	1형, 2형일 경우, 활강길이가 1 500 mm 이하일 때 도착지점 길이가 300 mm 이상일 것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	1형의 경우, 활강지점길이가 7 500 mm 초과일 때 도착지점 길이가 1 500 mm 초과일 것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도착지점 높이	☐ 활강길이 1 500 mm 이하(200 mm 이하일 것) ☐ 활강길이 1 500 mm 초과(350 mm 이하일 것)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		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미끄럼틀의 도착지점 말단의 높이는 100 mm 이하일 것. 단, 물이용놀이기구의 미끄럼틀의 도착지점길이가 1 000 mm 이상인 경우는 일반미끄럼틀의 도착지점높이 기준을 적용함	() mm ☐ 합 ☐ 불 ☐ -
도착지점	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미끄럼틀의 경우 2형 미끄럼틀을 사용하여야 한다.		☐ 합 ☐ 불 ☐ -		
미끄럼틀 말단	1형 미끄럼틀의 말단 부분은 지면 쪽으로 꺾어져 내려간 형태로, 말단부분의 곡률반경이 50 mm 이상 이거나, 반대방향으로의 각이 100° 이상이어야 한다.	()° ☐ 합 ☐ 불 ☐ -			
미끄럼틀의 표면		미끄럼틀과 미끄럼틀 주위의 접근가능한 구조물들은 사용자의 옷이 걸리지 않을 것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된 미끄럼틀의 연결부의 국부 높이차는 5 mm 이내일 것 미끄럼틀 표면이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, 이음부 사이의 틈이 발생하지 않을 것.		☐ 합 ☐ 불 ☐ -	
자유공간		개방 나선형 미끄럼틀의 자유공간 높이는 1 000 mm 이상일 것 개방 나선형 미끄럼틀의 측면 자유공간의 경우 1 000 mm 이상 또는 유지측면 안쪽에서 측정 시 최소 530 mm 이상일 것.		() mm ☐ 합 ☐ 불 ☐ - () mm ☐ 합 ☐ 불 ☐ -	
하강공간		미끄럼틀의 하강공간은 제1부 4.2.8.2.4 (하강공간의 범위)에 따라 결정되며,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장애물이 없을 것		☐ 합 ☐ 불 ☐ -	
터널 미끄럼틀, 복합 미끄럼틀	여유공간	활강지점에 수직으로 측정하였을 때, 내부높이는 650 mm 이상, 내부폭은 650 이상일 것.		높이 : () mm 폭 : () mm ☐ 합 ☐ 불 ☐ -	
	위치	터널지점은 적어도 출발지점의 끝에서 시작할 것. 도착지점 끝까지 연장되어있지 않을 것. 터널지점은 전체 터널지점 상에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.		☐ 합 ☐ 불 ☐ -	
☐ 연결(부착)미끄럼틀 ☐ 독립미끄럼틀 ☐ 독 미끄럼틀 ☐ 나선형 ☐ 곡선형 ☐ 터널 ☐ 복합터널 ☐ 다수트랙			특이사항		

(/)